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41 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 한준호·김문수·박용갑

이건태 • 박균택 • 정준호

허성무 · 정태호 · 이용우

강유정 • 박상혁 • 이해민

김원이 · 김성회 · 김동아

조승래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·갱신에 관한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국토지리정보원은 2023년 말 기준 고속국도 전 구간 등 총 31,887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였고, 2030년까지 약 11만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임.

이처럼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변동된 도로 정보의 갱신 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동된 도로정보를 신속히 갱신하여 정밀도로지도 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으나, 국토지리정보원이 갱신에 소요되는 예산 부족으로 갱신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정밀도로지도 갱신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다"를 "구축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도로노선,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·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	제22조(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
갱신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	갱신) ①
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	
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구축하고</u>	<u>구축하여</u>
갱신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<u>야 한다</u> . <u>이 경우 도로노선, 도</u>
	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
	•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
	<u>갱신하여야 한다.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